

# 심곡본동 한울 에이치밸리움 디그니어스 입주자 모집공고문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상황 해제시 까지)

- 정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건본주택 관리를 사전예약 및 홈페이지 분양안내(<http://h밸리움.com>)로 병행하여 운영하며,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1)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2)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3) 방문자 명부 작성에 불응할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건본주택 방문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심곡본동 한울 에이치밸리움 디그니어스에 대한 사전예약 및 분양안내는 상담전화(☎ 032-611-011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 02. 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 02. 16.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 분은 청약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착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2순위로 청약 가능)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과거 5년 이내의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자
  - 재당첨 제한(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투기과열지구 공급주택 한정)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 이전기관종사자 등에 특별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 사실 등) 조회 방법 : 본 주택에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당첨 사실 조회 및 청약 제한사항을 미리 확인하시어 부적격 당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 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사용으로 변경되어,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예금, 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3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6호)	10년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 이전기관중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청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청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 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2. 16.) 현재 부천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천시 1년 이상(2020 . 02. 16.) 이전부터 계속 거주(외국거주기간 제외)한 신청자가 부천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부천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 11. 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부천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정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료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료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료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받거나, ②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제1호 :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제2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제3호 :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최하층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2. 1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3. 2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30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4.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2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시,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 승낙
  -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함
  -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부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hbellium.com>) 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용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부천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85㎡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분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 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85㎡초과 주택은 일반 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단, 본 주택은 공급 세대가 85㎡이하로 가점제 75% 적용)
  - 청약 1순위 자격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2순위 청약 가능)
  - 청약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방식,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청약 시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분류됨)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5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일정, 청약 신청방법 및 당첨자 발표일, 지정계약기간 안내**

-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부천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021. 02. 26. (금)	2021. 03. 02. (화)	2021. 03. 03. (수)	2021. 03. 04. (목)	2021. 03. 10. (수)	2021. 03. 22. (월) ~ 2021. 03. 24. (수)
방법	인터넷 청약(08:00~17:30)			개별조회 청약Home(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방문계약 (10:00 ~ 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10:00 ~ 14:00)</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일반공급)</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 : "청약홈" 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및 사업주체 홈페이지</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 : "청약홈" 앱</li> </ul>	• 당사 건본주택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 바랍니다.

※ 2021.02.02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부천시 공동주택과-6284(2021.02.09.)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심곡로15번길 42(심곡본동 660-2번지)
- 공급규모 : 지하 2층~지상 최고15층, 2개동, 총 66세대(특별공급 33세대[일반(기관추천) 5세대, 다자녀가구 7세대, 신혼부부 14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 생애최초 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주요일자 : 최초허가일자(2020. 10. 16.), 착공일자(2020. 12. 23.), 준공예정일자(2022. 06월 예정)
- 입주시기 : 2022년 07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 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038	01	053.9910C	53C	53.9910	18.4808	72.4718	37.1331	109.6049	27.5044	14	1	1	3	1	1	7	7	1
		02	054.5710F	54F	54.5710	18.3544	72.9254	37.5320	110.4574	27.7998	2	0	0	0	0	0	2	-	
		03	055.4070D	55D	55.4070	19.5652	74.9722	38.1069	113.0791	28.2257	14	1	1	3	0	1	6	8	1
		04	058.1700B	58B	58.1700	19.9097	78.0797	40.0073	118.0870	29.6332	14	1	2	3	0	1	7	7	1
		05	059.6910A	59A	59.6910	21.1495	80.8405	41.0534	121.8939	30.4081	14	1	2	3	1	1	8	6	1
		06	059.3650E	59E	59.3650	19.7836	79.1486	40.8291	119.9777	30.2420	8	1	1	2	0	1	5	3	1
합 계											66	5	7	14	2	5	33	33	5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 ×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대지비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http://h밸리움.com>) 사이버모델하우스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천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 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부가세 없음)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	호수	층 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입주지정일
53C	14	101동	3호 (203~1503)	2층(테라스)	1	114,905,000	213,395,000	328,300,000	32,830,000	295,470,000
				3~4층	2	114,905,000	213,395,000	328,300,000	32,830,000	295,470,000
				5~7층	3	119,105,000	221,195,000	340,300,000	34,030,000	306,270,000
				8~10층	3	123,305,000	228,995,000	352,300,000	35,230,000	317,070,000
				11~13층	3	127,505,000	236,795,000	364,300,000	36,430,000	327,870,000
				14~15층	2	131,705,000	244,595,000	376,300,000	37,630,000	338,670,000
54F	2	102동	601호	6층	2	121,730,000	226,070,000	347,800,000	34,780,000	313,020,000
			602호			121,730,000	226,070,000	347,800,000	34,780,000	313,020,000

55D	14	4호 (204~1504)	2층(테라스)	1	117,495,000	218,205,000	335,700,000	33,570,000	302,130,000	
			3~4층	2	117,495,000	218,205,000	335,700,000	33,570,000	302,130,000	
			5~7층	3	121,695,000	226,005,000	347,700,000	34,770,000	312,930,000	
			8~10층	3	125,895,000	233,805,000	359,700,000	35,970,000	323,730,000	
			11~13층	3	130,095,000	241,605,000	371,700,000	37,170,000	334,530,000	
			14~15층	2	134,295,000	249,405,000	383,700,000	38,370,000	345,330,000	
58B	14	101동	2호 (202~1502)	2층(테라스)	1	112,945,000	209,755,000	322,700,000	32,270,000	290,430,000
				3~4층	2	112,945,000	209,755,000	322,700,000	32,270,000	290,430,000
				5~7층	3	117,145,000	217,555,000	334,700,000	33,470,000	301,230,000
				8~10층	3	121,345,000	225,355,000	346,700,000	34,670,000	312,030,000
				11~13층	3	125,545,000	233,155,000	358,700,000	35,870,000	322,830,000
				14~15층	2	129,745,000	240,955,000	370,700,000	37,070,000	333,630,000
59A	14	1호 (201~1501)	2층(테라스)	1	115,465,000	214,435,000	329,900,000	32,990,000	296,910,000	
			3~4층	2	115,465,000	214,435,000	329,900,000	32,990,000	296,910,000	
			5~7층	3	119,665,000	222,235,000	341,900,000	34,190,000	307,710,000	
			8~10층	3	123,865,000	230,035,000	353,900,000	35,390,000	318,510,000	
			11~13층	3	128,065,000	237,835,000	365,900,000	36,590,000	329,310,000	
			14~15층	2	132,265,000	245,635,000	377,900,000	37,790,000	340,110,000	
59E	8	102동	1호 (201~501)	2층(테라스)	1	113,330,000	210,470,000	323,800,000	32,380,000	291,420,000
				3~4층	2	113,330,000	210,470,000	323,800,000	32,380,000	291,420,000
				5층	1	117,530,000	218,270,000	335,800,000	33,580,000	302,220,000
			2호 (202~502)	2층(테라스)	1	113,330,000	210,470,000	323,800,000	32,380,000	291,420,000
				3~4층	2	113,330,000	210,470,000	323,800,000	32,380,000	291,420,000
				5층	1	117,530,000	218,270,000	335,800,000	33,580,000	302,220,000

※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059.6910A	058.1700B	053.9910C	055.4070D	059.3650E	54.5710F
약식표기	59A	58B	53C	55D	59E	54F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및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소수점5자리에서 반올림)되며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로 0.0001㎡ 단위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조망별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미포함 되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발코니확장 공사 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의 상세설명은 하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등)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합니다.
- 건본주택은 55D 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미건립 타입(59A, 58B, 53C, 59E, 54F)은 건본주택 내 모형 및 사업승인 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 계약금(분양가의 10%)은 건본주택 방문 계약 체결 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계좌는 하단부 계약체결의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고,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공급계약서에 따라 정합니다.
  - 가. 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 나. 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 잔금의 선납할인을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시행위탁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및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 해제가 될 수 있고,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약식표기)		59A	58B	53C	55D	59E	54F	합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0	0	0	0	0	0	0	
	장기복무 제대군인	0	0	0	0	0	0	0	
	장애인	경기도	1	1	1	0	0	0	3
		서울특별시	0	0	0	1	0	0	1
		인천광역시	0	0	0	0	1	0	1
중소기업근로자	0	0	0	0	0	0	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부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1	1	1	1	1	0	5	
	서울,인천 거주자(50%)	1	1	0	0	0	0	2	
신혼부부 특별공급		3	3	3	3	2	0	1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0	1	0	0	0	2	
생애최초 특별공급		1	1	1	1	1	0	5	
합계		8	7	7	6	5	0	3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



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b>1회 한정/ 자격 요건/ 자격 제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b>무주택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li> </ul>
<b>청약자격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부천시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 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기관추천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 특별공급 해당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합니다.)</li> <li>※ 장애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거주자</li> <li>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구분</li> <li>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충족(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세대수(전용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5세대</li> <li>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li> <li>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 `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li> <li>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li> </ul>

	<p>※ 추천기관</p> <p>①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p> <p>②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p> <p>③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p> <p>④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 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p>	<p>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p>다자녀가구 특별공급</p>	<p>•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p> <p>•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충족(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p> <p>•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p>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p> <p>※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임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임양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임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p> <p>※ 이혼자녀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p> <p>※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p> <p>※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영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p> <p>•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구분</p>	<p>• 공급 세대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7세대</p> <p>•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269호] (2018.05.08.)에 의거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 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포함)에게 공급합니다.</p> <p>•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되, 경기도의 경우 부천시 1년이상 거주 신청자가 기타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p> <p>• 경기도 거주자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미달이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p> <p>•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은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경기도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 적용되지 않습니다.</p> <p>•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정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p> <p>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p> <p>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p>신혼부부 특별공급</p>	<p>•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p> <p>* 단, 2018.12.11. 전 기준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p> <p>•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충족(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p> <p>•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p> <p>•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구분</p> <p>※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 으로 확인</p> <p>※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p> <p>※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p> <p>※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 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p> <p>※ 기타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p>	<p>• 공급 세대수(전용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14세대</p> <p>•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p> <p>•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합니다.</p> <p>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임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시킨 경우를 말함)를 포함</p> <p>*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p> <p>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자녀 또는 2018.12.11.이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p> <p>•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p> <p>-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p> <p>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부천시에 1년이상 거주한자) 거주자</p> <p>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p> <p>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p> <p>*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p> <p>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p> <p>•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p> <p>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부천시에 1년이상 거주한자) 거주자</p> <p>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p> <p>*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p> <p>*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된 경우만 해당</p> <p>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p> <p>※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 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p>

		<p>입주예정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ul>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li> <li>청약자격요건 : ①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② 세대주일 것 ③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li>※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에 해당</li> <li>※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li> <li>※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li> <li>※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li> <li>※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 세대수(전체 공급세대수의 3% 범위): 2세대</li> <li>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li> <li>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li> </ul> </li> <li>※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2호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 가점 산정기준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 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li> </ul> </li> <li>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ul>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li> <li>-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li> </ul> </li> <li>※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li>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li> <li>-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li> <li>- 세대주일 것</li> <li>-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 세대수(전체 공급세대수의 7% 범위): 5세대</li> <li>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li> <li>-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li> <li>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ul>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다자녀 특별공급 운영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 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수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 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무주택기간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당해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계	100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 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5,554,984원 ~ 7,776,976원	6,226,343원 ~ 8,716,878원	6,938,355원 ~ 9,713,695원	7,594,084원 ~ 10,631,716원	8,249,813원 ~ 11,549,736원	8,905,542원 ~ 12,467,75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6,665,981원 ~ 8,887,973원	7,471,611원 ~ 9,962,147원	8,326,026원 ~ 11,101,366원	9,112,901원 ~ 12,150,533원	9,899,775원 ~ 13,199,699원	10,686,650원 ~ 14,248,866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 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 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221,478원	8,094,245원	9,019,860원	9,872,308원	10,724,756원	11,577,203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160% 이하	7,221,479원 ~8,887,973원	8,094,246원 ~9,962,147원	9,019,861원 ~11,101,366원	9,872,309원 ~12,150,533원	10,724,757원 ~13,199,699원	11,577,204원 ~14,248,866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130%}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선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에 관한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당첨 동호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 예비대상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li> <li>-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li> </ul>
예비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해당 세대수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li> <li>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li> <li>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300%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li> <li>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ol> </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가능 (단,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기간 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12.11)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신혼 기간 내 주택 소유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경과 시 2순위 해당)</li> <li>- 특별공급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만 65세 이상 신청자에 한해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만 방문접수(건본주택)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청약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건본주택 방문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특별공급 당첨자 구비서류 참조)</li> <li>- 방문접수(건본주택) 접수 시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li> <li>-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査 또는 확인결과 평정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 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합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 하므로, 예비대상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 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li> <li>-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li> <li>-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공급신청자의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 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査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ul>

###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접수가 가능함.</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여도 부천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li> <li>- 세대주일 것</li> <li>-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li>-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ul> </li> </ul>
청약 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li> <li>본 주택은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해당제한(규칙 제3조제2항 각호 (3호, 5호, 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 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의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의 청약이 제한됩니다.</li> <li>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li> <li>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합니다.</li> <li>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부천시의 경우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에 해당하며 기타로 청약하여야 합니다.</li> <li>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li> <li>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 방위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가능]</li> <li>※ 청약통장 관련 준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가능합니다.</li> <li>②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li> <li>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li> <li>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 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금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청약 가능합니다)</li> </ol> </li> <li>※ 공통 - 총별, 동별, 호별 등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접수 불가)</li> <li>※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li> <li>②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li> <li>③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li> </ol> </li> <li>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위를 부여합니다.</li> <li>※ 신청한 가정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한 가정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점수와 비교하여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됩니다.</li> </ul>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구 분	부천시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75%),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전용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30%) 적용</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자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별표1 제1호 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 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및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를 포함한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무주택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 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 을 확인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이상~만30세미만: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사실증명원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 자동계산)
		6개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 특별공급 제외)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만 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2. 16.)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2. 16.) 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2. 16.)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0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시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 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 02. 26. (금) (청약Home : 08: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고령자 및 장애인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신청자 본인만 건본주택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 PC 또는 스마트폰 가능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사업주체 건본주택(032-611-0110)
일반 공급	일반 1순위(당해)	2021. 03. 02.(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대행은행 창구
	일반 1순위(기타지역)	2021. 03. 03.(수) 08:00~17:30		
	일반 2순위	2021. 03. 04.(목) 08:00~17:30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문의:032-611-0110)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합니다.(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주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속]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속」⇒「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속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장)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장)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민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민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수도권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ul> </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li> </ul>

유의사항	<p>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건본주택)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으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외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시 둘 다 무효 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외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생애최초특별공급제외)</li> </ul>
------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건본주택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 호수와 미계약 동, 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 호수와 미계약 동, 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 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 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 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 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추첨 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합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V. 당첨자 발표 일정

###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당첨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1. 03. 10. (수)</li> <li>- 확인방법</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1. 03. 11. (목) ~ 2021. 03. 14. (일)</li> <li>• 장소 : 건본주택(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534)</li> <li>- 특별공급 당첨자 : 특별공급 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지참</li> <li>- 일반공급 : 계약체결 서류 지참</li> <li>※ 당첨자 서류 검수일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원활한 계약체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1. 03. 22.(월) ~ 201. 03. 24.(수) 3일간(10:00~16:00)</li> <li>• 장소 : 건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534)</li> <li>※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일반공급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 나누거나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구 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 03. 10. (수) ~ 2021. 03. 19. (금)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 03. 10.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특별공급 당첨자 구비서류 (인터넷 청약시는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 기간 내 접수 완료하여야 함. 정보취약계층은 견본주택 내 특별공급 청약 접수 시 제출완료 하여야함)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일반 (기관추천)	<input type="checkbox"/>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견본주택에 비치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실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input type="checkbox"/>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input type="checkbox"/>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input type="checkbox"/>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 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분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input type="checkbox"/>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input type="checkbox"/>	복무 확인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군인」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확인서 제출(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주인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인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인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인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인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혼인 신고일, 자녀수, 과거1년근로/ 사업소득세,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월평균 소득확인(건본주택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 신고일 확인(상세내역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혼인적령 18세)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내역 발급)
		○	피부양	피부양	성명,주인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인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인등록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상세”발급 *직계존 비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1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재직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인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과거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입증 서류) ※ 다음 장 소득증빙서류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	소득증빙 서류		※해당연도에 소득세 납부 및 1년간간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인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원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접수장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는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넓어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 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 ■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당첨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서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건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 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 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출입국사실증명서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 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거쳐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거쳐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 세대 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미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 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 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전 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 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주택소유에 관 한 증명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제출 시 추가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청약자	본인발급용(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 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전산관리 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1)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1년
- 2) 수도권 외 6개월 3.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기준)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Ⅶ.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 ■ 계약기간 및 장소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1. 03. 22.(월) ~ 2021. 03. 24.(수) 3일간(10:00~16:00)	심곡본동 한울에이치벨리움 디그니어스 건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534 1층)

- ※ 상기 일정을 참조하여 반드시 해당 일 및 해당시간에 건본주택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또는 집단감염확산을 방지하고자 건립된 건본주택 내 마스크 착용하여야 하며, 해외 입국자 또는 확진자로 인한 자가격리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별도 분양사무실에 통보 및 협의하여야 하며, 일정 등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별도 연락이 없거나 현장 내 발열로 인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하여 부적격당첨 소명기간(7일)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유지 됨.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 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 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하고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 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 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 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점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점자로 관리합니다.
- ※ 당점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점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은 사업주체가 반환해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점될 경우 당점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타 아파트 청약 신청 시 1순위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 기반시설 및 혐오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전매가 금지되며, 분양권 전매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 및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 변경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의 공급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계약시 구비사항

- ※ 당점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한 당점자 분께서는 계약기간 내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부적격 당점자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는 분은 구비서류와 같이 소명자료 제출)
-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구비사항
본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 입금증(분양금 및 통합발코니 계약의 계약금)</li> <li>*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li> <li>*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진행 불가</li> </ul>
제 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점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당점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건본주택 비치)</li> <li>- 대리인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li> </ul> </li> </ul>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하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농협은행	301-0281-3569-81	(주)무궁화신탁

- ※ 당점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 자는 없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101동 3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10301홍길동 / 108동 13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81301홍길동)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

**■ 입주예정일 : 2022년 7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지정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기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 후 입주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됨.**

**VIII. 추가선택품목 계약**

※ 추가선택품목은 입주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아래 품목은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유상 품목이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미선택으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 및 하자보수에 관한 민원사항은 당사와는 무관함.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단위 : 원 / VAT 포함)**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주택형	구분	발코니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전 타입	거실	21,000,000	2,100,000	18,900,000	
	안방	15,000,000	1,500,000	13,500,000	
	침실1	10,000,000	1,000,000	9,000,000	
	침실2	10,000,000	1,000,000	9,000,000	
	주방	31,400,000	3,140,000	28,260,000	

※ 타입별 발코니확장면적 및 평면이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주택형에 따라 제공 품목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확장 세부 품목**

구분	적용타입	품목	선택시	미선택시
거실	전타입	시스템 창호	24mm 창호 설치	미설치
		우물 천정	우물 천정 마감	미설치
		신발장(혹경 마감)	설치	미설치
		아트월	설치	미설치(도배 마감)
		월패드	설치(IOT연동)	미설치
		실크벽지	설치	일반벽지 마감
		강마루	설치	강화마루
		거실 전등	고효율 고급 LED등 설치	일반 전등
		공용 욕실	일체형(샤워기 세면대)	미설치

주방	59A, 58B, 53C, 55D	현관 바닥	고급 대리석 및 타일 설치	타일 마감
		현관 도어락	스마트 시스템 도어락(IOT 연동)	미설치
		냉매 배관	거실 / 안방 설치	미설치
	58B	확장형 주방 상하부장	설치	미설치
		다용도실 팬트리 수납장	설치	미설치
		다용도실 슬라이딩도어	설치	미설치
	59E, 54F	아일랜드 식탁(스마트폰 무선충전기)포함	설치	미설치
		식탁용 전기쿡탑(1구)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설치	미설치
		'c'자형상하부 주방가구	설치	일자형 기본 주방가구
	전타입	다용도실 팬트리 수납장	설치	미설치
		다용도실 슬라이딩도어	설치	미설치
		추가 패키지 품목	안방 파우더룸가구 설치	시멘트 몰탈마감
		냉장고장	설치	미설치
		강마루	설치	일반 장판
		시스템 창호	24mm 시스템 창호 설치	일반 창호
		주방 전등	고효율 고급 LED등 설치	일반 전등
		식탁 등	설치	미설치
		주방 상판	고급 인조대리석 주방 상판 설치	일반 상판
실크벽지		설치	일반 벽지 마감	
쿡탑		3구 전기쿡탑	가스렌지	
주방 싱크대 벽체		고급 타입 마감	시멘트 몰탈 마감	
안방	전타입	시스템 창호	24mm 시스템 창호 설치	일반 창호
		실크벽지	설치	일반 벽지 마감
		안방 욕실 도어	설치	미설치
		화장실 마감	일체형 샤워기(부스포함)	미설치
		냉매 배관	설치	미설치
침실1	전타입	안방 전등	고효율 고급 LED등 설치	일반 전등
	59A, 58B, 55D	시스템 창호	24mm 시스템 창호 설치	일반 창호
		드레스룸 (행거)	설치	미설치
		주얼리장	설치	미설치
	53C, 59E, 54F	슬라이딩 도어	설치	미설치
		불박이장	설치	미설치
		실크벽지	설치	일반 벽지 마감
강마루		설치	일반 비닐 장판	
침실2	전타입	침실 전등	고효율 고급 LED등 설치	일반 전등
		시스템 창호	24mm 시스템 창호 설치	일반 창호
		실크벽지	설치	일반 벽지 마감
		강마루	설치	일반 비닐 장판
		침실 전등	고효율 고급 LED등 설치	일반 전등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납부계좌

※ 발코니 확장 계약비용은 아래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건보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101호 홍길동 →1010101홍길동)

※ 발코니 계약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포함)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납부계좌	수협은행	1010-2062-8868	(주)무궁화신탁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며, 비선택 세대는 선택형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확장 계약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동도가 저하될 수 있고, 내부 인테리어가 상이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계약의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계약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계약 선택 시 비선택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계약 비선택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계약 비선택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은 적 책임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 확장시에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구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상부세대가 발코니계약 비선택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타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계약 비선택 세대 중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X. 추가선택품목 계약 (별도 유상옵션 품목)

※ 추가선택품목은 입주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아래 품목은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유상 품목이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미선택으로인한 계약자의 불이익 및 하자보수에 관한 민원사항은 당사와는 무관함.

### (1)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세포함)

타입	구분	에어컨 설치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제조사
전 타입	선택 1	거실/안방	5,000,000	500,000	4,500,000	LG전자
	선택 2	거실/안방/침실1	6,500,000	650,000	5,850,000	
	선택 3	거실/안방/침실1/침실2	8,000,000	800,000	7,200,000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신청 시 수량 및 냉방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단열재 적용범위,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 및 구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가 미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신청 시 천정형 냉매 매립배관이 설치되며,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신청 시 설치대수에 따라 설치위치(실)가 모집공고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설치 위치를 변경 지정할 수 없습니다.
-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신청 시 등기구 위치 및 기타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신청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별도 유상유선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 ※ 실외기실 및 발코니에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건본주택에 설치된 천정형 냉난방기기는 건본주택용 전시품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는 장비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오니 계약 체결시 실제 설치위치 및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빌트인 냉장고**

(단위 : 원/ 부가세포함)

타 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제조사	모델명	비고
전 타입	1,550,000	155,000	1,395,000	삼성	RF52M5972S8	

**(3) 특화가구**

(단위 : 원/ 부가세포함)

타 입	구 분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제조사	비고
전 타입	안방 특화가구	2,130,000	213,000	1,917,000	특화가구의 경우, 시행 및 시공사의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므로, 자체제작으로 진행됩니다.	

**(4) 현관 중문 옵션**

(단위 : 원/ 부가세포함)

타 입	구 분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제조사	비고
전 타입	3연동 슬라이딩 도어	2,000,000	200,000	1,800,000		

**(5) 거실/주방 바닥재 및 아트월 옵션**

(단위 : 원/ 부가세포함)

타 입	구 분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제조사	비고
전 타입	바닥 타일	3,000,000	300,000	2,700,000		

(6) 테라스 옵션

(단위 : 원/ 부가세포함)

타입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제조사	비고
59A 201호	테라스	24,000,000	2,400,000	21,600,000		해당 호수 이외에는 테라스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8B 202호		40,000,000	4,000,000	36,000,000		
53C 203호		20,000,000	2,000,000	18,000,000		
55D 204호		40,000,000	4,000,000	36,000,000		
59E 201호		40,000,000	4,000,000	36,000,000		
59E 202호		50,000,000	5,000,000	45,000,000		

(7)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수협은행	1010-2062-8872	(주)무궁화신탁

- ※ 별도 유상옵션은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납부 시기는 계약 체결 시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정해진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납부금액은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대금 납부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101호 홍길동 →1010101홍길동)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 공급금액에 대한 계약금, 잔금 금액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계약 선택 시에만 선택이 가능하며,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의 경우 계약 사항에 따라 설치금액이 차이가 발생되며, 이에 따라 납품가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별도 유상옵션 옵션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계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및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개시 이후 해지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소시 계약금은 환급되며, 이후 취소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됩니다.
- ※ 추가 선택품목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 외 별도 유상옵션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 ※ 추가 선택품목의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상대업종」에 비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공사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되지 않습니다.(별도 유상옵션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 2항【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하여 소득공제 제외항목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7호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품목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품목은 주택형별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한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X. 기타사항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세포함)

구 분		건축감리	구조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심곡본동 한울에이치벨리움 디그니어스	회사명	㈜성진건설기술단	㈜밀레니엄구조	㈜대흥전력기술단	㈜한빛안전기술단	㈜현이엔지
	감리금액	262,790,000	12,100,000	4,400,000	22,000,000	5,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음.

###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규정

구 분	적용여부	비고
고기밀창호	적용	직접외기창, 간접외기 세대현관문, 세대내방화문 기밀성능 1등급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수변전, 급수/급탕펌프, 보일러 고효율기자재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세대 내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 내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옥외공간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단위세대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내 절수형 수전설치

※ 친환경주택은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을 관련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분 설계기준(제1호)	단열 조치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분 설계기준(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	적용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함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난방,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함
	절수형설비 설치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 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실별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분 설계기준(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함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함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함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 임

(단위 : 원/ 부가세포함)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2,299,040,000원	제01292021-101-00010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내용

<p>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p>	<p>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각호에 따라 주택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습니다.</p> <p>【주택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주식회사 무궁화신탁)를 말합니다. 이와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div>
<p>보증약관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p>	<p>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택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li> <li>주택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li> </o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대물변제】 주택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택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택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 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li> </o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입주금】 주택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li> <li>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li> </ol>



	<p>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p> <p>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p> <p>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에 종속채무</p> <p>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p> <p>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p> <p>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p> <p>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p> <p>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예에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p> <p>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p> <p>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p> <p>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p> <p>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p> <p>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p> <p>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p> <p>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p> </div>
<p>보증약관 제4조 (보증사고)</p>	<p>①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p> <p>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p> <p>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p> <p>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div> <p>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p> <p>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p> <p>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p> <p>※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p> <p>※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 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p>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도 주택으로 봄)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565호 제3조)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②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기타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⑨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⑩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 기타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일반 공통사항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에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세대별로 향, 일조조건 및 조망이 상이하나 청약 및 계약 전 확인바람
-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에 의하여 대지경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조정 및 세부 식재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붕층에 의장용 구조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본 건축물의 주차방식은 자주식 주차 형태이며, 진입높이는 약 3m임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에 따라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관 및 소음 발생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이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고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모형에 표현된 옹벽 및 난간 등은 기능,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입주자의 동의절차 없이 변경(재질, 높이 등)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공용공간(계단실, 기계실, 통신실 등)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입주자 또는 관리소를 통해 환기 및 관리를 적절히 시행해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개별난방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준함
- 건물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 품목, 건물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건물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고, 실제 시공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홍보관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 제공되는 품목, 선택할 수 있는 품목 및 평면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른 적용되지 않은 평면의 형태 또는 제공품목(가구 및 시스템선반 등)의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음
- 건본주택의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는 전사용으로 설치한 품목(전사용 가구 등)과 실제 시공 시와 다르게 전시된 사항(벽체 및 도어 등)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분양승인 시 홍보관 내부를 영상 촬영하여 보관함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임
-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류의 일부만 표기되어 있으며, 추후 설치여건에 따라 설치위치 및 개수가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 내 단위세대 조도량은 전시조명 등에 의해 실제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등기구의 색온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전화상담 및 건본주택 방문상담 등은 청약(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귀속하고, 별도의 구상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람

## ■ 설계관련 주요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설계변경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의 파일 및 기초형식 등은 굴토 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상복합건물은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한 동의사항 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관련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세대 / 디자인

- 조경, 아파트 공용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외부마감은 기본을 101동은 석재, 페인트 / 102동은 석재로 마감함
- 세대내 가스 및 각종 설비배관의 일부가 노출로 시공될 수 있고, 주방 상판(가스), 거실천정(에어컨)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욕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F.D는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전 세대 내부에는 화재 시 대피를 위한 대피공간이 별도로 설치되며, 위치는 각 호실마다 다르며, 청약 및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람

### ● 세대 / 규격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 (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음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당 현장은 타입별로 창호형태(높이, 폭 등), 서비스 면적, 발코니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바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샷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 세대 / 마감재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건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창호와 다른 타입의 창호 및 난간대가 설치될 수 있음. 따라서 모형 및 분양자료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바닥마감재의 색상과 폭이 상이할 수 있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 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람
- 현관중문은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사양,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쪽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 대피공간에는 임의 시설물, 장비, 가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변경 등이 불가함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바닥, 벽, 천정 등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신발장, 침실 불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일부 타일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 (예: 무늬재, 천연석재,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제 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재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욕실은 외부장이 미설치 됨
- 단위세대(실) 내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홈네트워크 관련 장비 등의 위치는 설치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람

● **세대 / 발코니 확장**

- 시공 상의 문제로 플라스 또는 마이너스 옵션 계약이 불가하며, 향후 옵션 변경 계약 또한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진행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생활 습관, 환기 여부 등에 의해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대피공간에는 화재 시 대피를 위한 공간이며, 대피공간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은 세대는 화재 시 대피를 위하여 인접 세대간 확장 발코니 부분의 일부분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시공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건본 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및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 할 경우, 관계법령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면적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으며 실 사용면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으로 사업주체 혹은 시공사는 수분양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발코니 선택형으로 전시하며, 비선택세대는 선택형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계약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시공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시공 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선택형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계약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계약의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계약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계약 시공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통통, 선통통BOX 및 드레인등이 계획 시공되어야 할 수 있으며, 발코니계약 선택 시 비선택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계약 비선택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계약 비선택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 확장시에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계약 비선택세대 중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계약 비선택세대 중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계약 비선택세대 중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부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계약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계약 비선택시 외부발코니창호는 미설치되며, 내부발코니창호만 이중창으로 설치되고,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 비확장평면으로 시공됩니다.따라서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주택형별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계약 선택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건본주택은 선택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선택세대는 선택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계약 비선택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 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방화문이 설치되는 공간은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타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정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 면적 및 구조**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의한 주거부 대지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확정측량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등으로 인한 면적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하고,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형별공급 면적(㎡)×0.3025 또는 형별공급면적(㎡)÷ 3.3058)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어 등) 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단지별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한 면적 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 및 확장면적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실시공시 변경사항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이영심, 윤송이, 시행수탁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및 시공사 주식회사 에이치디한울종합건설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매수인은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함
  1. 시행수탁자는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신탁재산의 보전 및 분양대금 완납자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하며, 본 사업관련 실질적 사업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시행위탁자에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2.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3. 시행위탁자와 시행수탁자간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일부세대의 소유권이 시행수탁자에서 공급계약자로 이전된 경우, 해당 이전된 세대를 포함 한다)와 동시에 공급계약 상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소유권이전,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의무 포함)는 계약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됨을 인지하여야 함
  4.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시행수탁자는 분양공급자(매도인)로서의 일체의무(공급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 반환의무, 소유권이전관련 업무, 입주지연 지체상금, 하자보수책임 등)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동 의무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관리형토지신탁사업약정)에 따라,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자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관리형토지신탁사업약정)에 의하여 부담함
  5. 공급계약자는 시행수탁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시공 상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6.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명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사업경비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 될 수 있음
  7. 시행수탁자는 신탁계약 및 신탁사업약정에 의거,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명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의 잔액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현존하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시행위탁자가 부담함을 계약자는 인지하여야 함

■ **사업관계자**

구 분	회 사 명	주 소	연락처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시행수탁자	(주)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P&S타워)	02-3456-0000	110111-2867418
시행위탁자	에이치밸리움	경기도 부천시 심곡로 15번길 42 (심곡본동 660-2)	070-4786-5125	284-15-00499
시공사	(주)에이치디한울종합건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42, 514호 (마곡동, 사이언스타)	02-3662-0913	110111-6632023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홍보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건본주택 홈페이지** : <http://h밸리움.com>

■ **건본주택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534 1층 (경인로 193)

■ **분양문의** : ☎ 032-611-0110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사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 사항에 오류 및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우선함